

청주지방법원 2014. 1. 8 선고 2013가합1706 판결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재판경과

대전고등법원(청주) 2015. 4. 21 선고 2014나278 판결

청주지방법원 2014. 1. 8 선고 2013가합1706 판결

전문

원고A

피고1. B

2. C 주식회사

3. D

4. 주식회사 E(변경전 상호: F 주식회사)

변론 종결 2013. 12. 4.

판결 선고 2014. 1. 8.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 1) 별지 목록 제1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건축폐자재 766㎡, 같은 도면 표시 19, 20, 21, 22, 1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관정 2㎡, 같은 도면 표시 23, 24, 25, 26,

2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수도 3m², 같은 도면 표시 27, 28, 29, 30, 2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원두막 4m², 같은 도면 표시 95, 96, 97, 98, 9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고압시설 24m² 등 시설물 일체를 철거 및 수거하고, 같은 목록 제1 기재 토지를 인도하고,

2) 별지 목록 제2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3, 34, 35, 36, 3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컨테이너 29m², 같은 도면 표시 37, 38, 39, 40, 3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컨테이너 19m², 같은 도면 표시 41, 42, 43, 44, 45, 46, 47, 48, 49, 4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컨테이너 47m², 같은 도면 표시 50, 51, 52, 53, 5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컨테이너 18m², 같은 도면 표시 54, 55, 56, 57, 5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대기석 7m², 같은 도면 표시 28, 31, 32, 29, 2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원두막 9m², 같은 도면 표시 59, 60, 61, 62, 63, 64, 5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골프연습장 106m², 같은 도면 표시 65, 66, 67, 68, 69, 70, 71, 72, 6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풋살장 2,642m², 같은 도면 표시 73, 74, 75, 76, 7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대기석 7m², 같은 도면 표시 77, 78, 79, 80, 7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클럽하우스 197m², 같은 도면 표시 81, 82, 83, 84, 85, 86, 8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식당 111m², 같은 도면 표시 87, 88, 89, 90, 8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컨테이너 7m², 같은 도면 표시 91, 92, 93, 94, 9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동물사육장 32m² 등 시설물 일체를 철거 및 수거하고, 별지 목록 제2기재 토지를 인도하고,

3) 별지 목록 제3, 4 기재 각 토지를 인도하라.

나. 피고들은 각자,

1) 2013. 5. 1.부터 위 가. 1)항 기재 시설물의 철거, 수거 및 별지 목록 제1 기재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776,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2) 2013. 5. 1.부터 위 가. 2)항 기재 시설물의 철거, 수거 및 별지 목록 제2 기재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5,656,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의 가항,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013. 4. 1.부터 주문 제1의 가. 1)항 기재 시설물의 철거, 수거 및 별지 목록 제1 기재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776,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2013. 4. 1.부터 주문 제1의 가. 2)항 기재 시설물의 철거, 수거 및 별지 목록 제2 기재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5,656,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피고 B, D, 주식회사 E은 각자 원고에게 64,16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원고의 동생이자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D은 피고 B의 사위로서 피고 주식회사 E(변경전 상호 : F 주식회사, 이하 '피고 E'이라 한다)을 피고 B과 공동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충북 청원군 G 답 4,093㎡, H답 4,258㎡(위 각 토지는 2009. 12. 30. 충북 청원군 G 답 8,351㎡로 합병되었다가, 2010. 2. 24. 충북 청원군 G 답 4,261㎡, I 답 4,083㎡, J답 7㎡로 분할된 후, 2012. 7. 2. G 답 4,261㎡는 별지 목록 제1 기재 토지와 K 답 836㎡로, I 답 4,083㎡'는 I답 4,079㎡와 L답 4㎡로, J답 7㎡는 J답 3㎡와 별지 목록 제4 기재 토지로 각각 분할되었으며, I 답 4,079㎡는 2012. 7. 4. 지목이 답에서 대지로 변경된 후 K과 함께 별지 목록 제2 기재 토지로

합병되었고, J 답 3㎡'는 2012. 7. 4. 지목이 답에서 도로로 변경된 후 L 도로 4㎡와 함께 별지 목록 제3 기재 토지로 합병되었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그 중 개별 토지를 가리킬 때에는 별지 목록의 순번에 따라 '제○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9. 10. 28.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청주지방법원 2009. 12. 17. 접수 제16429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다. 원고는 2010. 2. 10. 청주축산업협동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억 2,000만 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청주축산업협동조합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축산업협동조합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 2010. 3. 2.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7억 6,700만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등기를, 2010. 11. 1.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9억 4,900만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등기를, 2012. 8. 6.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7억 5,400만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등기를 각각 경료하여 주었다.

라. 원고는 2012. 8. 6. 중소기업은행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7,200만 원, 채무자 피고 E,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중소기업은행 명의로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

마. 피고들은 2009. 12. 17.경부터 현재까지 제1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766㎡ 지상에 건축폐자재를 쌓아두고 있고, 같은 도면 표시 19, 20, 21, 22, 1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2㎡에 관정을, 같은 도면 표시 23, 24, 25, 26, 2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3㎡에 수도를, 같은 도면 표시 27, 28, 29, 30, 2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ㅁ" 부분 4㎡ 지상에 원두막을, 같은 도면 표시 95, 96, 97, 98, 9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ㅂ" 부분 24㎡ 지상에 고압시설을 각각 설치하였다(이하 피고들이 제1토지에 쌓아두거나 설치한 건축폐자재 및 시설물을 통틀어 '이 사건 제1시설물'이라 한다).

바. 한편 피고들은 2012. 2.경부터 현재까지 제2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3, 34, 35, 36, 3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29m², 같은 도면 표시 37, 38, 39, 40, 3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L" 부분 19m², 같은 도면 표시 41, 42, 43, 44, 45, 46, 47, 48, 49, 4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47m², 같은 도면 표시 50, 51, 52, 53, 5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18m², 같은 도면 표시 87, 88, 89, 90, 8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E" 부분 7m² 각 지상에 콘테이너를 쌓아두고 있고, 2012. 6.경 같은 도면 표시 54, 55, 56, 57, 5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7m² 지상에 대기석을, 같은 도면 표시 28, 31, 32, 29, 2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9m² 지상에 원두막을, 같은 도면 표시 59, 60, 61, 62, 63, 64, 5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106m² 지상에 골프연습장을, 같은 도면 표시 65, 66, 67, 68, 69, 70, 71, 72, 6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o" 부분 2,642m² 지상에 풋살장을, 같은 도면 표시 73, 74, 75, 76, 7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7m² 지상에 대기석을, 같은 도면 표시 77, 78, 79, 80, 7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197m² 지상에 클럽하우스를, 같은 도면 표시 81, 82, 83, 84, 85, 86, 8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111m² 지상에 식당을, 같은 도면 표시 91, 92, 93, 94, 9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ㅍ" 부분 32m² 지상에 동물사육장을 각각 설치하거나 신축하였다(이하 피고들이 제2토지에 쌓아두거나 설치 또는 신축한 콘테이너 및 시설물을 통틀어 '이 사건 제2시설물'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M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충청북도본부 청원군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12. 17. 피고들에게 제1토지를 기간의 정함이 없이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도록 하였고, 2012. 2.경 피고들에게 제2 내지 4토지를 기간의 정함이 없이 차임 월 5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사용하여 왔는데, 원고는 2013. 3. 31.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사용대차계약 및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공동차주 내지 공동임차인인 피고들은 이 사건 제1, 2시설물을 수거 및 철거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며, 각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사용대차계약 및 임대차계약 종료일 다음날인 2013. 4. 1.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얻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 B, D, E은 각자 제2 내지 4토지에 관한 2012. 6.부터 2013. 5.까지 미지급 차임 64,16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피고 회사가 N, O로부터 매수하기로 합의되었던 부동산인데, 취득세감면 등을 고려하여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그 등기명의만을 원고 명의로 경료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고, 설령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더라도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 동안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할 권원이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에 대한 판단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충청북도본부 청원군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를 종합하면, ① 피고 B이 N, O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N, O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11억 5,000만 원 상당(2009. 10. 28. 1억 2,000만 원 지급, 2009. 12. 14. N, O의 기존 대출금 변제 및 계좌이체를 통하여 10억 3,000만 원 상당 지급)을 지급하였던 사실, ②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이후 아무런 대가 없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 및 피고 E을 채무자로 하는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던 사실, ③ 피고들이 2009. 12. 17.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하여 원고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던 사실, ④ 피고 B이 2012. 8. 31.경 원고에게 제2토지의 지목변경에 기한 지방세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한편, 갑 제5 내지 7, 13 내지 22호증, 을 제1, 4,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M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무렵 피고 B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명목으로 11억 원(2009. 10. 29. 4억 원, 2009. 12. 9. 2억 원, 2009. 12. 11. 5억 원)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들은, 피고 회사가 2009. 12.경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대금 7억 원을 차용하였던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회사는 2009. 12. 18. 한국지역난방공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이후에도 곧바로 원고에게 위 7억 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②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고가 주도하여 경료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비롯한 권리관계서류를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이래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를 납부하여 왔던 점, ④ 피고들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피고 B이나 피고 회사를 매수인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 또는 명의신탁약정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고 못하고 있는 점, ⑤ 피고 회사가 피고 B이 아닌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굳이 명의신탁하여야 할 별다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던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호증의 일부 기재는 믿기 어렵고,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사용대차 및 임대차관계가 성립되었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증인 M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9. 12. 17. 피고들에게 제1토지를 반환시키나 퇴거시기를 정함이 없이 사용하도록 승낙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제1토지에 관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사용대차관계(이하

'이 사건 제1사용대차'라 한다)가 성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원고가 2012. 4.경 피고들에게 제2 내지 4토지를 기간의 정함이 없이 차임 월 5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M의 증언 및 이 법원의 감정인 P에 대한 임료감정축탁결과만으로는 제2 내지 4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B와의 관계, 원고가 피고들에게 제1토지를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승낙하였던 점,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아무런 대가 없이 피고 B 및 피고 E를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던 점,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차임 청구를 한 적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제2 내지 4토지에 관하여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사용대차관계(이하 '이 사건 제2사용대차'라 한다)가 성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원고의 이 사건 제1, 2사용대차계약에 대한 해지권 발생 및 행사에 관한 판단 가) 민법 제613조 제2항에 의하면, 사용대차에 있어서 그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주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수익이 종료한 때에 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하나, 현실로 사용수익이 종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그 차용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민법 제613조 제2항 소정의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용대차계약 당시의 사정, 차주의 사용기간 및 이용상황, 대주가 반환할 필요로 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의 입장에서 대주에게 해지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4. 2001다2366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B은 원고의 동생으로서, 원고와 사이에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기간의 정함이 없이 무상으로 사용하는 내용의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9. 12. 17.경부터 현재까지 제1토지에 건축폐자재를 쌓아두는 등 제1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고, 2012. 6.경부터 현재까지 제2 내지 4토지에 풋살장 및 식당 등을 설치 또는 신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회사는 2013. 3. 6.경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 회사와 원고 사이의 3자간 등기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3년 4개월 동안 제1토지를, 1년 동안 제2 내지 4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였음에도, 원고에게 무상사용 허락에 대한 감사의 뜻이나 호의를 표시하기는 커녕 오히려 원고를 상대로 명의신탁약정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원고와 사이에 다툼을 계속하는 등의 상황에 이를 정도로 쌍방의 신뢰관계 내지 우호관계가 허물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사용대차계약의 해지권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우선 원고가 2013. 3. 31.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제1, 2사용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제1, 2시설물의 수거 및 철거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면서 피고들의 무단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고 있는바, 이 사건 소장에는 묵시적으로나마 이 사건 제1, 2사용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겨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소장 부분이 2013. 4. 30. 피고들에게 최종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같은 날 이 사건 제1, 2사용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제1, 2시설물의 수거·철거 및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도와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 2사용대차계약은 2013. 4. 30. 해지되었으므로, 공동차주인 피고들은 대주인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제1, 2시설물을 수거 및 철거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며, 각자 이 사건 제1, 2사용대차계약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제1, 2시설물이 위치한 제1, 2토지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나아가 피고들이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상당액이라 할 것인데, 이 법원의 감정인 P에 대한 임료감정축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피고들이 점유를 시작한 2012. 6.

1.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3. 5. 31.까지 산정한 월 차임은 제1토지의 경우 1,776,000원, 제2토지의 경우 5,656,000원이고, 그 이후의 차임도 같은 액수 상당으로 추인되므로, 결국 피고들이 제1, 2토지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액수는 이 사건

제1사용대차계약의 종료일 다음날인 2013. 5. 1.부터 이 사건 제1시설물에 대한 수거, 철거 및 제1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776,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과 이 사건 제2사용대차계약의 종료일 다음날인 2013. 5. 1.부터 이 사건 제2시설물에 대한 수거, 철거 및 제2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5,656,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이 된다.

다) 원고는, 원고가 피고들과 사이에 제2 내지 4토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 B, D, E에게 2012. 6.경부터 2013. 5.경까지의 차임 합계 64,165,000원의 지급도 구하나, 제2 내지 4토지에 관한 임대차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B, D, E에 대한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들은 이 사건 제1, 2시설물을 수거 및 철거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며, 각자 부당이득금으로 2013. 5. 1.부터 이 사건 제1시설물에 대한 수거, 철거 및 제1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776,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과 이 사건 제2시설물에 대한 수거, 철거 및 제2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5,656,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재형

판사송효섭

판사박정진

별지